

—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12월 14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12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12월 22일

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경 배

나. 제안이유

-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에게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자활자립 계기마련을 유도하고,
-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의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, 통합 신설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의 통합 관리로 자금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전세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(안 제3조)
 - 전세입주 대상은 입주신청일 현재 1년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월세, 무료임대 등 무주택수급자 세대로 하고
 -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수급자로서 영세상행위 자금, 생계

자금, 학자금, 기타 사업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함.

○ 전세 입주보증금 (안 제5조, 제6호, 제8조)

- 전세 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이하 무이자로 하고
- 용자기간은 3년이며,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토록 함.

○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(안 제7조, 제9조)

-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이하 무이자이고, 상환기간은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으로 상환기간 경과시에는 5%의 연체이자를 징수토록하며,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함. (안 제9조)

○ 천재지변 등으로 자금이 회수가 불가능할 때 상환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 (안 제21조)

○ 기존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 및 구미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소득 지원을 위한 자금은 별도 신설되는 특별회계 소관으로 이입 조치 함.(안 부칙 제2조, 제3조)

라. 참고사항

-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
-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「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」 중 자금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인 생활안정기금 운영 사항과 기존조례인 「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」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
- 주요내용은 전세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, 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에 관한사항,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을 정하고 있으며,

- 주요 변경내용은 안 제5조의 전세계약 방법을 당사자간 계약으로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,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1천만원이하를 2천만원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10조의 정기적금 납입금액을 매월 「3만원~6만원」을 「5만원~20만원」으로 개정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